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1594
----------	-------

발의연월일 : 2026. 9. 28.

발 의 자 : 송옥주 · 윤준병 · 주철현
이수진 · 이개호 · 문대림
임미애 · 이상식 · 황명선
안태준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홉플러스 사태로 인해 그간 반복되어 온 농산물 출하대금 미지급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됨. 특히, 거대 자본 앞에서 절대 약자일 수밖에 없는 농민과 농업법인, 농협 등은 거래처를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농산물을 출하하고도 출하대금의 지급을 요청하기가 어려움.

그러다 고스란히 출하대금을 떼이는 사례가 반복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농산물 생산유통 기반이 무너지고 국민의 식량과 삶을 책임지는 먹거리 안전망도 붕괴될 수 있는 지경에 이르러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는 상황임.

이에 따라 1998. 2. 20. 제정되어 근로자를 지키는 방패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임금채권보장법」을 준용하여 농민과 농가의 생계와 직결되는 농업노동의 대가라고 할 수 있는 계약거래 농산물 공급자와

농민에 대한 출하대금 지급을 보장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6조의2 등).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농산물 출하대금 지급보장) ① 제6조에 따른 계약거래 농산물 수요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농산물 출하대금을 통화(通貨)로 직접 농산물 출하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계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출하대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6조에 따른 계약거래 농산물 공급자가 제1항에 따른 출하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지급받지 못한 출하대금을 청구하면, 제3자의 변제에 관한 「민법」 제469조에도 불구하고 대지급금을 지급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대지급금의 지급이나 출하대금 지급 보장에 드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제6조에 따른 계약거래 농산물 수요자로부터 부담금을 징수한다.

④ 제2항에 따른 대지급금 지급과 제3항에 따른 부담금 징수에 필요한 그 밖의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5조제1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제6조의2제3항에 따른 계약거래 농산물 수요자의 부담금

제57조제2항에 제1호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5.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계약거래 농산물 공급자에 대한 대지급금의 지급

제8장에 제8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5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6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출하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자
2.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제6조의2에 따른 대지급금을 받은 자
3.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제6조의2에 따른 대지급금을 받게 한 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계약거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제6조에 따른 계약거래 농산물 공급자와 수요자는 이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제6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6조의2(농산물 출하대금 지급 보장) ① 제6조에 따른 계약거래 농산물 수요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농산물 출하대금을 통화(通貨)로 직접 농산물 출하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계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출하대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u> <u>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6조에 따른 계약거래 농산물 공급자가 제1항에 따른 출하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지급받지 못한 출하대금을 청구하면, 제3자의 변제에 관한 「민법」 제469조에도 불구하고 대지급금을 지급한다.</u> <u>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대지급금의 지급이나 출하대금 지급 보장에 드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제6조</u>

제55조(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
다.

1. 2. (생략)

<신설>

3. 4. (생략)

② (생략)

제57조(기금의 용도) ① (생략)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
을 위하여 지출한다.

1. ~ 1의4. (생략)

<신설>

2. ~ 5. (생략)

③ ~ ⑤ (생략)

<신설>

에 따른 계약거래 농산물 수요
자로부터 부담금을 징수한다.

④ 제2항에 따른 대지급금 지
급과 제3항에 따른 부담금 징
수에 필요한 그 밖의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5조(기금의 조성) ① -----

--.

1. 2. (현행과 같음)

2의2. 제6조의2제3항에 따른 계
약거래 농산물 수요자의 부담
금

3. 4.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57조(기금의 용도)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 1의4. (생략)

1의5.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계
약거래 농산물 공급자에 대한
대지급금의 지급

2. ~ 5. (현행과 같음)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85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6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출하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자

2.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제6조의2에 따른 대지급금을 받은 자

3.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제6조의2에 따른 대지급금을 받게 한 자